

| |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3079호 |
| 의 결 | 2026. . . |
| 연 월 일 | (제 회) |

| | |
|------|--|
| 의결사항 | |
|------|--|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고 성 군 수 |
| 제출연월일 | 2026. 3. 13. |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07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6. 3. 13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,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(시설사용료, 체험료)에 대한 명시(안 제7조)
- 나. 사용료 감면기준을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으로 변경(안 제8조)
- 다.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)
- 라. 자연휴양림 체험료 추가(안 별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50039(2025. 12. 24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2091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2. 22.~2026. 1. 1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)”를“(입장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입장료 및 시설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”를 “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사용료 감면)”을“(시설사용료 감면)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편의시설)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동판매기
2. 특산품 판매소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(제7조 관련)

1. 입장료: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2. 시설사용료

| 구분 | 규격 | 수용인원 (명) | | 사용기준 | 요금(원) | | 비 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| | 기준 | 최대 | | 비수기 (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) | 성수기 (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) 및 주말 | | |
| 숙박 시설 | 숲속의 집 (단독형) | 20㎡ | 2 | 3 | 1동/1박 | 60,000 | 80,000 | A동 |
| | | 33㎡ | 4 | 6 | | 100,000 | 120,000 | C동 |
| | | 36㎡ | 4 | 6 | | 100,000 | 120,000 | B-1동 |
| | | 56㎡ | 6 | 8 | | 120,000 | 140,000 | B-2동 |

※ 비 고

- “성수기 및 주말” 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,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, “비수기 및 주중” 이란 “성수기 및 주말”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.
-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.
- 숙박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을 징수하며, 수용인원은 해당객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. 다만,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.

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(제7조 관련)

1. 입장료: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2. 시설사용료

| 구분 | 규격 | 수용인원 (명) | | 사용기준 | 요금(원) | | 비 고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| | 기준 | 최대 | | 비수기 (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) | 성수기 (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) 및 주말 | | |
| 숙박 시설 | 숲속의 집 (단독형) | 20㎡ | 2 | 3 | 1동/1박 | 60,000 | 80,000 | A동 |
| | | 33㎡ | 4 | 6 | | 100,000 | 120,000 | C동 |
| | | 36㎡ | 4 | 6 | | 100,000 | 120,000 | B-1동 |
| | | 56㎡ | 6 | 8 | | 120,000 | 140,000 | B-2동 |

※ 비 고

- “성수기 및 주말” 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,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, “비수기 및 주중” 이란 “성수기 및 주말”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.
-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.
- 숙박시설 기준인원초과 시 초과 1명당 1만원을 징수하며, 수용인원은 해당객실의 최대인원 이하로 제한한다. 다만, 7세 미만은 인원초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수용인원에는 포함된다.

3. 체험료

- 가. 체험료는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나. 각 프로그램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.
- 다. 관리·운영자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취소되는 경우 징수한 체험료는 100% 반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)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 의 <u>입장료 및 시설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</u> 는 별표 1과 같다. | 제7조(입장료 등) ----- ----- -- <u>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 료</u> ----- -----. |
| 제8조(사용료 감면) (생 략) | 제8조(시설사용료 감면)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제12조(편의시설) 군수는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자연휴 양림 내에 설치·운영할 수 있 다. 1. <u>자동판매기</u> 2. <u>특산품 판매소</u> 3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</u> |

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녹지공원과장 김 주 화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4. 12. 20.>

[본조신설 2015. 1. 20.]

[제목개정 2018. 2. 21.]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(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7. 1.>

고성을 새롭게
군민을 힘나게